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– 203호

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교육훈련)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

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(교육훈련) 「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」시행계획 및 지정 절차를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0일(금)
산업통상부장관

Ⅰ.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

1 사업목적

□ **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 및 운영**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**석.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**

2 지원내용

□ **지원대상** : **비수도권 지역*** 첨단산업** 특성화대학원 설치(예정) 대학

*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을 제외한 지역

** **반도체, 배터리, 디스플레이, 바이오, 로봇, 항공방산** 등 「국가첨단전략산업」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, 대학원 보유역량 및 운영계획 등 선정평가 지표를 **평가 후 지원 첨단산업 분야 및 대학 최종 결정**

□ **지원규모** : '26년 150억원, 5개 대학 신규 선정 (주관 단독)

○ 대학당 지원규모 : 연간 30억원, 5년간 150억원 내외

*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

□ **지원기간** : 최대 5년 (3+2년, 2단계)

□ **지원조건** : 국비 100% 이하(민간부담금 자율 매칭)

□ **지원내용** : 인건비(학생인건비 포함), 교육환경 구축비(교육·연구 장비 등), 교육과정 개발·운영비,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

□ **지원자격** :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설치(예정), 석.박사 학위과정 운영,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한 **비수도권지역*** 대학**

*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제2조에 따른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을 제외한 지역

↳ ▲ **「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」**('25.9.30., 지방시대위원회),
▲ **「산업 R&D 혁신방안」**('26.1.28., 산업부) 등 후속 이행

구분	지원조건	
대학원 설치	• 특성화대학원 설치	• 신청가능한 대학원의 종류 :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 • 대학원(학과)명 : 지원분야·특화분야명이 표기된 형태 - 例: 배터리대학원(공학과), 바이오대학원(공학과) 등
학위 과정	•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	• 필수 운영 학위과정 : 석사, 박사
전임 교원	• 전임교원 확보 및 확충	•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

* 교육과정 개발 운영시 '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' 참고

□ **추진체계**

3 신청자격

□ **신청자격** :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, 설치 예정인 대학

*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

□ **지원제외 대상**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(기관 및 개인)는 신청 불가

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확인 가능

○ 연구개발기관, 연구(책임)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인 경우

○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

4 추진절차 및 일정

추진절차	시행기관	일정(안)
통합공고	산업통상부 / 한국산업기술진흥원	'26.3.20.~.'26.4.20.
↓		
사업설명회	한국산업기술진흥원	3.25
↓		
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전산)	신청기관 → 한국산업기술진흥원	~4.20.
↓		
평가위원회 개최	한국산업기술진흥원(연구개발과제평가단)	4월~
↓		
평가결과 확정	산업통상부	5월~
↓		
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	5월~
↓		
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	산업통상부/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	5월~
↓		
특성화대학원 지정	산업통상부/통합사무국 → 신청기관	5월~
↓		
협약체결	한국산업기술진흥원 ↔ 신청기관	5월~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5 평가방법 및 지표

□ **평가방법 :**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, 발표평가 실시

*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

□ **선정평가 지표**

분류	내용	배점
1. 보유역량	1-1. 보유역량	15
2. 대학원 운영계획	2-1. 추진전략 및 목표	10
	2-2. 대학원 운영	15
3. 산업 연계 협력 활성화 계획	3-1. 산학협력 기반구축	15
	3-2. 산업계 자원 활용 계획	10
	3-3.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계획	20
4. 교육·연구 역량 확충 계획	4-1. 대학 자체 역량확충 계획	10
5.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	5-1.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	5
합 계		100

6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

□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

7 사업신청 안내

□ **신청기간** : 2026. 3. 20.(금) ~ 2026. 4. 20.(월) 17시까지

□ **신청방법**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https://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<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>

접수방법	①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(주관, 공동, 위탁)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

<table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</th><th rowspan="2">⇨</th><th colspan="2">신청</th><th rowspan="2">⇨</th><th rowspan="2">연구과제
신청완료</th></tr>
<tr><td>연구자는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</td><td>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</td><td>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</td><td>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・승인</td></tr>
<tr><td>연구자</td><td>주관연구개발기관</td><td>연구책임자</td><td>주관연구개발기관장</td><td></td></tr>
</table>
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

1 연구자
① IRIS 회원가입
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
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
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③: 연구책임자는 필수(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)

2 주관연구개발기관
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</td></tr>
<tr><td>유의사항</td><td>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<u>접수기간 초기 준비</u> 필요
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<u>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</u>
③ 접수 마감일 17:00까지 '완료 및 제출'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(접수증 출력) 불가
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
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<u>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</u>
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⑥ <u>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)</u>
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>기 타</td><td>■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(www.iris.go.kr)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
*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</td></tr>
</table>

□ 유의사항

○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%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,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(현물 제외)의 10% 이하로 계상해야 함

○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

– 단,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

○ '25년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연구자로 참여 불가

○ 보안등급 분류 :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

*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「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을 따름

○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

*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

○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,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

○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

Ⅱ.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제도

□ 지정절차

추진절차	시행기관	일정(안)
연구개발과제 최종확정결과 제공	산업통상부 → 통합사무국	'26. 5월~
↓ 지정위원회 운영	통합사무국 / 지정위원회	5월~
↓ 지정검토 결과보고	통합사무국 → 산업통상부	5월~
↓ 특성화대학원 지정 확정	산업통상부	5월~
↓ 특성화대학원 지정결과 고시	산업통상부	5월~
↓ 지정결과 통보	통합사무국 → 신청기관 / 전문기관	5월~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지정요건

○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,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

–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, 연구책임자의 조교수 이상 자격 등

*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 가능

□ 유의사항

○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신청(수행)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,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총장

Ⅲ. 공통 사항

□ 문의처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문의처</th></tr>
<tr><td>▪ 사업신청 관련</td><td>▪ 사업내용 관련 문의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
<table>
<tr><th>연번</th><th>분야</th><th>연락처</th></tr>
<tr><td>1</td><td>반도체</td><td>02-6009-3237</td></tr>
<tr><td>2</td><td>배터리</td><td>02-6009-3270</td></tr>
<tr><td>3</td><td>디스플레이</td><td>02-6009-3232</td></tr>
<tr><td>4</td><td>바이오</td><td>02-6009-3233</td></tr>
<tr><td>5</td><td>항공방산</td><td>02-6009-3233</td></tr>
<tr><td>6</td><td>로봇</td><td>02-6009-3234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▪ 지정신청서 관련</td><td>▪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통합사무국, 02-6009-3235</td></tr>
<tr><td>▪ 온라인신청 관련</td><td>▪ 시스템(IRIS) 접수 문의 (1877-2041)
* 신청서류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URL(https://www.iris.go.kr)</td></tr>
</table>

○ 소관부처 :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, 반도체과, 배터리전기전자과, 디스플레이가전팀,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, 인공지능기계로봇과, 첨단민군협력과

□ **사업설명회** : 2026.3.25.(수), 15:00~, 대전 선샤인호텔 3층 오아시스홀

Ⅳ. 근거법령 및 규정

□ 근거 법령 및 규정

○ 관련 법(법령)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산업기술혁신촉진법
-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
○ 관련 요령(고시) 등

-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
-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

※ 붙임 1.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
2.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
3.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.
4. 부속서류 각 1부. 끝.